

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유아용 의자 개정 고시

산업통상자원부(2025. 2. 4.)



산업부는 「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」제22조제3항에 따른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(유아용 의자)의 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하였다.

1. 개정 취지

- 유아용 의자 안전기준 제1부(유아용 높은 의자)의 측면전도 안정성 시험법의 내용 일부를 보완하고자 함

2. 주요 내용

- 제1부(유아용 높은 의자) 5.9(안정성 시험)의 5.9.2항에 따른 측면전도 시험시 의자에 장비(빔)가 고정되는 위치를 추가
-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의 개정사항 반영 등 연계 안전기준 현행화

3. 시행일

- 2025년 2월 4일

* 세부내용

-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(<https://www.motie.go.kr/> → 정책·정보 )에서 확인